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19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특례	3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3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	18
4.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	25
5.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37

I. 개요

1.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81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등 근로자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특례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88조의2 및 제106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특례

가. 개요

□ 주택청약종합저축¹⁾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무주택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제도의 납입한도는 연간 300만원이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²⁾가 적용되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까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공제한도액)³⁾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등 신규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으로, 「주택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는 입주자저축을 의미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함.

2)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④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공제 한도						현 행	
						<u>120만원</u>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87②)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④)	+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52⑤)	15년 이상	원칙	<u>800만원</u>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u>1,800만원</u>
						고정금리 + 비거치식	<u>2,000만원</u>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u>600만원</u>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계좌 수는 2025년 9월 말 기준 2,511만 계
좌로 나타나고 있음.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 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좌)

연도	2021.12	2022.12	2023. 12.	2024. 12.	2025. 9.
계좌 수	26,772,724	26,381,295	25,613,522	25,172,173	25,115,926

자료: 한국부동산원(청약Home)

동 소득공제는 지난 2010년 신설된 이후 적용기한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2017년 세법개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기한이 신설되었고, 2019년 세법개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회 적용기한이 연장되었음.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4년에 400억원이며, 2026년에는 468억원으로 전망됨.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감면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295	△357	△415	△396	△400	△445	△468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윤재옥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형동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최기상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87조제2항) ○ 적용대상: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공제액: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u>해외이주</u>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현행과 같음) ○ 공제액: (현행과 같음) ○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 「<u>해외이주법</u>」에 따른 해외이주(정부안) ○ 적용기한: <u>2027년 12월 31일까지 (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u> <u>2028년 12월 31일까지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정부안)</u> <u>2029년 12월 31일까지 (김형동의원안)</u> <u>2030년 12월 31일까지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윤재옥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417), 김영진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김형동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1),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엄태영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47),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9건의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위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2년간),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및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3년간), 김형동의원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4년간), 윤준병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5년간) 각각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은 하락추세에 있는 반면, 중위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소폭 증가 추세이며 상위가구의 자가보유율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감소세에 있음.

[소득별 자가점유율]

(단위: %)

연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전체	58.0	59.9	61.1	61.1	61.2	60.6	61.3	60.7
하위 (1~4분위)	50.0	48.5	49.3	48.8	48.2	46.9	47.8	47.3
중위 (5~8분위)	56.4	62.2	63.8	63.6	62.9	64.5	65.5	64.0
상위 (9~10분위)	77.7	79.3	79.9	81.5	81.9	80.2	80.5	78.3

주: 소득분위는 「2023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구분
자료: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 요약보고서, 2024. 12, p.46

또한, 동 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중위수 기준 6.3배로 2006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이 높아져(소득 하위가구 8.7배, 중위가구 6.3배, 상위가구 5.7배) 소득이 낮을수록 주택마련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단위: 배)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중위수	5.6	5.6	5.5	5.4	5.5	6.7	6.3	6.3
	평균	6.3	6.4	6.7	6.8	7.3	8.9	9.1	8.1
하위	중위수	9.8	8.3	9.0	6.8	8.0	9.4	10.0	8.7
	평균	11.6	11.1	12.0	9.0	9.6	14.1	14.9	13.2
중위	중위수	5.6	5.2	5.2	5.5	6.0	6.3	6.3	6.3
	평균	6.2	6.2	6.4	6.2	6.8	8.4	8.6	7.7
상위	중위수	5.0	4.8	4.8	3.6	3.9	7.1	6.4	5.7
	평균	5.0	5.3	5.7	4.3	4.5	8.1	7.9	7.2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요약보고서-”, 2024. 12, p. 51.

둘째,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 2085.2만명의 4.99%에 해당하는 104만명 가량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주택마련저축⁴⁾ 소득공제를 적용받았고 동 소득공제 적용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당 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사실

4) 국세통계연보상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을 합산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기준으로 하였음.

상의 증세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비율]

(단위: 명, %, 백만원, 만원)

구 분	연말정산신고 근로소득자(A)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자(B)	적용비율 (B/A)	공제 소득
2021년	19,959,148	1,037,378	5.2	459,601
2022년	20,534,714	1,063,010	5.18	442,728
2023년	20,852,234	1,039,888	4.99	409,116

자료: 각 년도 국세통계연보,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

□ 다만, 다음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⁵⁾, ①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인데, 그 중 대부분인 4,250만원은 주택청약을 통해 얻게 되는 자본이익에서 도출된 반면,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②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도 3.84%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③ 1인당 경감세액이 37,997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소득공제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

5)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귀속 연도	총급여 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금액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2023	1천만원 이하	5,145	10.32	200,538	0.62	12,032
	4천만원 이하	418,384	1,483.72	354,632	103.80	24,809
	7천만원 이하	554,942	2,352.35	23,891	248.73	44,821
	전체	97,8471	3,846	393,102	372	37,997

자료: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둘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약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세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현재 및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⁶⁾.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⁷⁾,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⁸⁾, 세대 간 주거 소비 특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단순히 적용

6)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9. 기획재정부

7)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는 2013년 52%에서 2023년 26%로 감소하였고, 부양자녀가 있는 수혜자는 2013년 28%에서 2023년 6%로 감소함.

8) 2021.12. 기준 26,772,724계좌에서 2025.9. 기준 25,115,926계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기간을 연장하기보다는 정책환경의 변화에 상응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적용기한의 연장 범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짧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경우, 연 평균 412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윤재옥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엄태영의원안	-412	-412	-412		-1,237	-412
김영진의원안	-412	-412			-825	-412
김형동의원안	-412	-412	-412	-412	-1,650	-412

또한,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422억원(연평균 474억 원)⁹⁾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

9)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항목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항목의 추계액을 합산한 금액임.

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정부안	△474	△474	△474	△1,422	△474

문 의 처

02)6788-5149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정부안 등)

현 행	개정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제87조제3항)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6백만원(종합소득금액 2천4백만원) 이하인 청년 - 의무가입기간 : 2년 - 특례내용 :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가입대상 : (현행과 같음) - 의무가입기간 : (현행과 같음) - 특례내용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7년 12월 31일: 김영진·서영교 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 윤재옥·엄태영·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 김형동의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u>

* 윤재옥의원안 2025. 2. 25. 발의(의안번호 8417), 김영진의의원안 2025. 2. 27. 발의(의안번호 8520) 엄태영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901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김형동의의원안 2025. 7. 24. 발의(의안번호 11691),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194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김영진·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윤재옥·엄태영·추경호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김형동의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었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산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연령¹⁰⁾(만 19세~34세), 소득¹¹⁾(근로소득자 총급여액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입이 허용되고,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비과세(연 납입금액 600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됨.

동 저축상품은 2025년 8월 가입자 기준 148만 6천명, 납입액 기준 8조원 규모로 가입자수와 납입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⑭ 법 제8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및 납입액 현황]

(단위: 천좌,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8.
가입자 수	397	514	571	610	1,299	1,486
납입액	13,776	20,626	26,708	31,923	66,638	80,021

※ '24.2월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

정부가 제출한 각 연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2021년 2천만원에서 2024년에는 3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도 이후 6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조세지출 실적]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0.2	0.5	2	3	6	6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청년 세대의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감안할 때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가구 중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는 자가점유율은 14.6%로, 전체 조사대상 가구¹²⁾(57.4%) 대비 저조한 상황으로,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비율(81.1%)이 높고 비아파트에 거

12) 국토교통부에서 수행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전체 표본가구(2023년 기준 6.1만가구)를 의미함

주하고 있는 가구비율¹³⁾도 타 특성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구 유형별 자가점유율 비교]

구 분	일반		청년		신혼		고령	
	'22	'23	'22	'23	'22	'23	'22	'23
자가점유율(%)	57.5	57.4	13.2	14.6	43.6	46.4	75.0	75.7

주: 자가점유율은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
 자료: 「2023년도 특성가구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24. 12.

둘째,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는 소비성향이 높은 청년들로 하여금 저축 유인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고, 15.4%의 이자소득까지 비과세되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저축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혜택만으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하여 비과세 및 우대금리 혜택을 추가하여 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약 순위나 가점 등 주택청약권 자체에 특별한 우대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13) 비아파트 거주 비율: 일반 47.6%, 청년 68.4%, 신혼 26.1%, 고령 54.6%

문 의 처
02)6788-5161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정부안등)

현행	개정안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 ○ 대상자: - 65세이상인 거주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 비과세한도: 5천만원 ○ 적용기한: <u>2025년 12월 31일까지</u>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 대상자: - 의원안: (현행과 같음) - 정부안: <u>65세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 수급자(정부안),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u> ○ 비과세한도: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 송석준의원안</u> - <u>2027년 12월 31일: 이종욱·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 이만희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 추경호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 윤준병의원안</u>

* 이만희의원안 2024. 12. 4. 발의(의안번호 6200), 이종욱의원안 2024. 12. 30. 발의(의안번호 7075)
 송석준의원안 2025. 1. 2. 발의(의안번호 7210),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추경호의원안 2025. 8. 21. 발의(의안번호 12297),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최기상의원안 2025. 1.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과 과세특례 적용대상자를 정비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1년 연장하는 안(송석준의원안), 2년 연장하는 안(이종욱·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이만희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추경호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윤준병의원안)이 제시되

었음.

이에 더하여, 정부안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¹⁴⁾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강화하려는 것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¹⁵⁾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

동 과세특례는 저축상품 간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14)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9%) 분리과세하던 세금우대종합저축¹⁶⁾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저축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던 생계형저축을 통합·재설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2025년 9월 실시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총 계좌 수는 약 1,008만개, 가입자 수는 약 542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현황]

(단위: 개, 명, 백억원)

연도	계좌 수	신규 계좌수	해지 계좌수	가입자 수	한도금액
2020년말	7,799,461	6,889,402	7,082,289	4,230,086	12,956
2021년말	7,912,717	7,038,086	7,016,097	4,346,098	13,512
2022년말	8,903,875	9,759,520	8,836,983	4,897,897	15,965
2023년말	9,605,841	8,940,672	8,378,731	5,187,421	17,211
2024년말	10,085,000	9,476,829	9,101,001	5,416,950	18,271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심층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조세지출은 2021년 2,575억원 규모였으나 2023년 5,461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6년 9,643억원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금리 상승¹⁷⁾에 따른 이자소득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16) 20세 이상 일반가입자에 대하여도 저축원금 1천만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를 허용하였으나 2014년 세법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폐지되었음.

17)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1.25%(2022년1월)→ 연3.25%(2023년 1월)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2,575	2,554	5,461	9,091	8,964	9,64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는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자산불평등도가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안정과 자산형성 지원을 계속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4년 자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평균 -669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자산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평균 20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자산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순자산 10분위별 가구 점유율]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전체	31,572	100.0	44,894	100.0
순자산 1분위	-666	-0.2	-669	-0.1
순자산 2분위	2,565	0.8	3,067	0.7
순자산 3분위	6,187	2.0	7,689	1.7
순자산 4분위	10,622	3.4	13,365	3.0
순자산 5분위	15,912	5.0	20,185	4.5

순자산 10분위별	2017		2024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평균 순자산 (만원)	점유율 (%)
순자산 6분위	22,050	7.0	28,280	6.3
순자산 7분위	29,536	9.4	38,803	8.6
순자산 8분위	40,131	12.7	55,032	12.3
순자산 9분위	57,393	18.2	83,629	18.6
순자산 10분위	131,916	41.8	199,516	44.4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¹⁸⁾는 2017년 0.584에서 2024년 0.612로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순자산 지니계수 현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순자산 지니계수	0.584	0.588	0.597	0.602	0.603	0.606	0.605	0.612

자료: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둘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이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헌신을 고려한 것으로 두터운 지원을 계속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정부안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거주자’ 요건을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비하는 안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임.

18) 순자산 지니계수: 순자산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함

첫째, 동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점이 있음.

동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 사회적 약자 혹은 유공자인 점을 고려할 때 소득요건과 관계 없이 65세 이상의 거주자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참고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¹⁹⁾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인정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280,000원,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임.

둘째, 인구 고령화로 인한 조세지출 증대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 제도의 정비를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의 대다수(93.6%, 507만명)가 65세 이상 거주자로 단순한 연령 기준만으로 과세특례 대상을 설정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

19)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구분	계좌수	가입자수
장애인	569,572	303,253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25	629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65세 이상 거주자	9,435,223	5,069,185

자료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 집중평가), 기획재정부, 2025. 9.

□ 다만, 정부안은 요건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초연금법」 20)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 요건은 중복되어 삭제하는 자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

20)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4.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엄태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김영진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이만희의원안, 서삼석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이병진의원안, 송옥주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유상범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서영교의원안(12789, 12819), 정희용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제105조제1항) ○ 영세율 적용대상 -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제5호)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제6호) ○ 적용기한 - 제5호: <u>2025년 12월 31일</u> - 제6호: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제5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원택·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이만희·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u> · <u>2035년 12월 31일(문대림의원안)</u> - 제6호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엄태영·김영진·이병진·송옥주·신영대·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서삼석·유상범·임호선·정희용의원안)</u>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추징(제105조제2항) ○ 적용대상 - <u>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u> ○ 추징액 - 그 <u>축산업용 기자재</u>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적용대상 - <u>농민·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u> - <u>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정부안)</u> ○ 추징액 - 그 <u>기자재</u> 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제106조제2항) ○ 면제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제9호) ○ 적용기한 - <u>2025년 12월 31일</u>	☐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수입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u> - <u>2028년 12월 31일(이병진·추경호·최은석·윤영석의원안, 정부안)</u> - <u>2030년 12월 31일(윤준병·서천호·유상범·임호선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공포한 날(윤준병·김선교·신영대의원안) - 2026년 1월 1일(엄태영·김영진·문대림·이원택·서천호·이만희·서삼석·이병진·송옥주·추경호·최은석·유상범·임호선·윤영석·서영교·정희용의원안, 정부안) ○ 적용례: 가산세 추징(제105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

현 행	개 정 안
	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정부안)

* 임태영의원안 2025. 3. 4. 발의(의안번호 8635),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김영진의원안 2025. 3. 11. 발의(의안번호 8790), 문대림의원안 2025. 3. 13. 발의(의안번호 8912), 이원택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18),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이만희의원안 2025. 3. 19. 발의(의안번호 910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송옥주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4), 추경호의원안 2025. 8. 6. 발의(의안번호 12018),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윤영석의원안 2025. 9. 3. 발의(의안번호 12676),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정희용의원안 2025. 9. 23. 발의(의안번호 1317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가.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 율·면제 적용기한 연장

- 개정안은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이하 “농어업용 기자재 등”이라 함)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동 특례제도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제를 적용함으로써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 농어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와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할 때, 농어민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동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취지임.

-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²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완화하고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른 2026년 감면세액은 2조 2,602억원으로 전망됨.

21)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비료, 농약,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 양돈케이지·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 어망·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등임.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 등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1997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2026년 감면 세액은 20억원으로 전망됨.

[농어업용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의 조세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2026(전망)
영 세 율	18,481	21,886	23,047	22,266	21,916	22,602
수입면세	34	46	24	23	19	20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한편,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최근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비율은 2023년의 경우 96.4%,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3% 수준으로 집계됨.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농·축산·임업용 (제105조제1항제5호)	95.8	95.8	96.0	95.8	96.4
어업용 (제105조제1항제6호)	4.2	4.0	4.2	3.6	3.3

주: 공급가액은 신고(귀속) 기준 금액이며,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농·어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0~80% 수준으로 여

전히 낮은 편이므로,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여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있음.

[농가·어가 가구당 소득 현황]

연 도	농 가		어 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C)
	농가소득(A)	비율(A/C)	어가소득(B)	비율(B/C)	
2015년	37,215	64.4	43,895	75.9	57,800
2016년	37,197	63.5	47,077	80.3	58,613
2017년	38,239	63.7	49,016	81.7	60,031
2018년	42,066	64.9	51,836	80.0	64,822
2019년	41,182	61.8	48,415	72.6	66,660
2020년	45,029	62.2	53,187	73.5	72,363
2021년	47,759	65.7	52,392	72.1	72,688
2022년	46,153	63.6	52,911	72.9	72,548
2023년	50,828	67.5	54,779	72.7	75,344
2024년	50,597	66.8	63,652	84.1	75,727

(단위: 천원, %)

주: 농가·어가소득은 농업·어업소득 및 비농업·비어업소득을 합한 농가·어의 총소득을 말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실질소득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농가·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둘째, 농어업 부문의 인력부족 현상²²⁾을 보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어민이 기자재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22)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어가는 4만 1천 가구(내수면 제외), 임가는 9만 8천 가구로 전년 대비 농가(-2.5%), 어가(-2.1%), 임가(-1.2%) 모두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농가 55.8%, 어가 50.9%, 임가 56.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농어업용 기자재 등 공급 및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제도 외에도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²³⁾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거		내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23)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부문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는 개략적으로 32개의 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타당성과 효과성이 확보되나 기자재 사용량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비료와 사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문제 발생이라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기본적으로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대규모 농어민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반면, 소규모·영세 농어민은 기자재 사용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아 대규모 농어민과 소규모 농어민 간의 세제 혜택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적용기한의 연장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2년에서 10년의 기간을 제안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2조 6,933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4조 9,888억원(연평균 2조 9,97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또한,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경우 세수는 2026년 32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158억원(연평균 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영세율	-26,933	-28,374	-29,894	-31,498	-33,190	-149,888	-29,978
수입면세	-36	-21	-34	-46	-24	-29	-3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적용시 추징사유 확대

- 개정안은 기존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농민²⁴⁾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되던 것을,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법 제105조의2²⁵⁾에서 농어민이 아닌 자가 모든 기자재에 대해 부당하게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영세율 적용에 있어서는 축산업용 기자재 등에 한정해 추징하고 있어, 제도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임.²⁶⁾

24)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 따르면,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됨.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당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등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등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26)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와 영세율 제도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환급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감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영세율 제도에 비해 비효율적이지만 농림어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비 농림어업부문으로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또한,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와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를 비교해보면 영세율 적용 대상 기자재는 비료, 농약, 사료, 동력경운기 등 주로 농림어업에만 사용되는 기자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용도로의 전용가능성을 낮게 본 반면,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는 농업·임업용 필름, 농업·임업용 파이프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 기자재가 많았기 때문에 부정수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음.²⁷⁾

그러나, 영세율 기자재의 종류²⁸⁾가 다양하고 타용도 전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기자재 또한 타용도 전용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추징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와 사후환급 제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제도의 우열
제도 혜택의 귀착	환급 방식 우위
납세협력비용, 환급대행수수료 등	영세율 방식 우위
세원수출 및 관리	환급 방식 우위
부정수급 방지	환급 방식 우위

자료: 기획재정부,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91

아울러,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기자재를 재판매하거나 타용도로 전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함.(‘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4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p192)

27)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어민이 아닌 자의 어업용 기자재 부정사용 현황은 국세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곤란함.

28) 2002년 처음 도입 당시 영세율 적용 기자재는 153개였고, 2006년 이후 130개 내외로 유지되었던 기자재는 2017년 유기농어업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177개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 농업용 기자재 범위를 조정하면서 현재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는 175개임.

함으로써,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선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7

5.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김기표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에 관하여 제공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제8호의3) ○ 적용기한 - 2015년 1월 1일부터 <u>2025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15년 1월 1일부터 <u>2027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서영교의원안) - 2015년 1월 1일부터 <u>2028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정부안) - 2015년 1월 1일부터 <u>2030년 12월 31일</u> <u>까지</u>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김기표의원안) ☐ 부 칙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김기표의원안 2025. 7. 8. 발의(의안번호 11336), 서영교의원안 2025. 9. 9. 발의(의안번호 1281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현행법 제106조제1항제8호의3²⁹⁾은 행복기숙사에 대하여 시설관리

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8. 교육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2013년 1월 세법 개정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 중 사립은 제8호에 따라, 연합은 제8호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022년 12월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는 제8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상 행복기숙사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

구 분	2014. 12. 31.까지 실시협약 체결		2015. 1. 1. ~ 2025. 12. 31. 실시협약 체결	
	행복기숙사 (사립)	행복기숙사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	행복기숙사 (연합)
적용조항	제106조제1항 제8호	제106조제1항 제8호의2	제106조제1항제8호의3	

□ 개정안은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서영교의원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김기표의원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행복기숙사(사립 및 연합)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 행복기숙사는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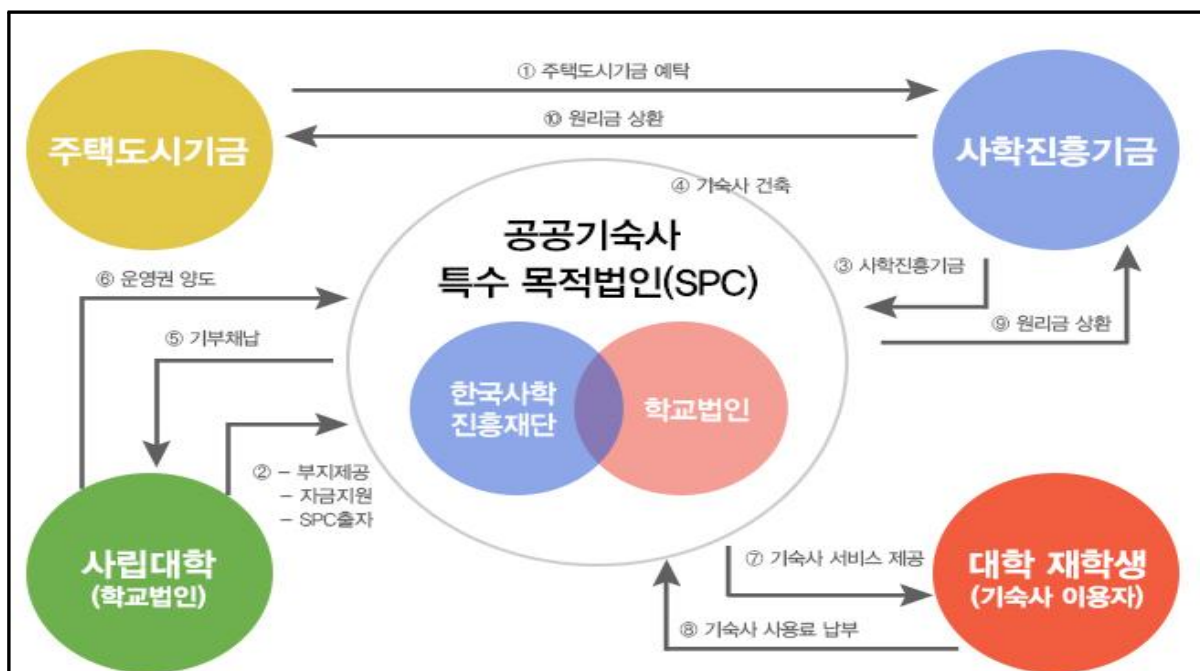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시행자가 되어 민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ion)와 같은 방식으로 기숙사를 건립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종류에는 ‘행복기숙사(사립)’과 ‘행복기숙사(연합)’이 있음.

먼저, 행복기숙사(사립)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이 각각 50%씩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사학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차입금) 및 사립대학의 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사립대학이 제공하는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에 기부채납하며, 최대 30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행복기숙사(사립)는 해당 사립대학의 학생만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음.

[행복기숙사(사립)사업 사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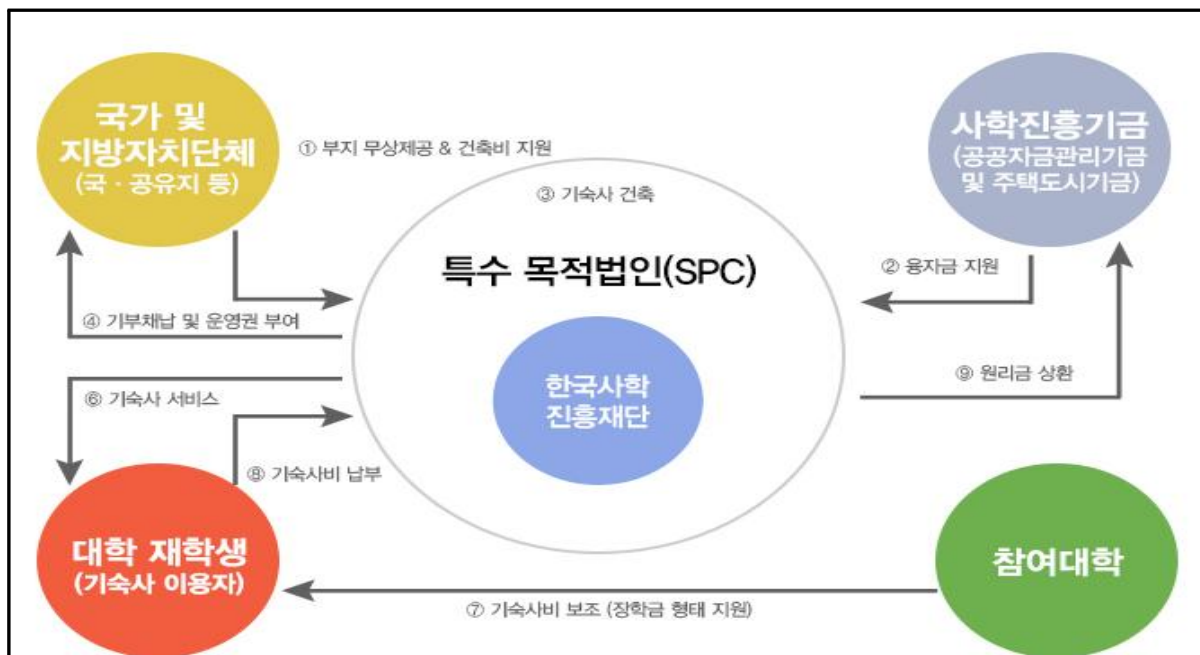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다음으로, 행복기숙사(연합)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사학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국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부지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토지 제공자에게 기부채납하며, 최대 30년간 기숙사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사학진흥기금 차입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행복기숙사(연합)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대학은 학생 1인당 5만원씩 기숙사비를 지원하여야 함.

[행복기숙사(연합)사업 사업구조]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2025년 6월 기준 행복기숙사는 65개(사립 54개, 연합 11개)를 추진하여, 총 36,051명(사립 27,092명, 연합 8,959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행복기숙사 추진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합계	인원
사립	6	7	10	5	6	4	3	3	1	2	3	2	-	2	54	27,092
연합	1	-	1	1	1	-	1	2	2	-	2	-	-	-	11	8,959
합계	7	7	11	6	7	4	4	5	3	2	5	2	-	2	65	36,05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 동 특례제도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2021년 59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7억원, 2024년 59억원이고, 2025년에는 59억원, 2026년에는 61억원으로 전망되어 증가추세에 있음.

[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운영권 등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	2026년 (전망)
감면액	59	52	57	59	59	61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학업 및 취업준비 기간 중 실질소득이 없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행복기숙사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실시협약 체결 시한을 연장하여 더 많은 대학생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된 8개의 추진 중인 기숙사 외에도 총 7개(연합)의 행복기숙사 사

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추진 예정 사업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
여 행복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간의 조세 형평성 및 정책효과
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행복기숙사 추진 현황 및 사업 수요]

(‘25.6월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장	소재지	수용 인원	추진 단계	개관 일정	
추진 중 (협약 완료)	사립	경인여대	인천	403명	시공업체 선정 중	‘27.1월	
		용인대	경기	400명	착공 예정(‘25.7월)		
		인하대	인천	1,810명	착공 예정(‘25.7월)	‘27.2월	
		아주대	경기	990명	착공 예정(‘25.7월)		
		대경대	경기	252명	설계·인허가 중		
	연합	한국체대	서울	704명	공사(‘24.6 착공)	‘26.1월	
		서울과기대	서울	1,020명	공사(‘24.12월 착공)	‘27.1월	
		인천대	인천	816명	공사(‘24.12월 착공)		
	소계			6,395명	-	-	
추진 예정 (협약 예정)	연합	대방동	서울	720명 수준	노후학사(군자녀) 부지 활용, MOU 체결 예정(‘25.7월)	-	
		대전광역시	대전	각 500명 수준	국유지 활용, 지자체 및 인근대학 협의 중		
		광주광역시	광주		폐교 부지 활용,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 중		
		화양초	서울				
		송실대	서울				사립대학 부지 활용, 대학 협의중
		인하대(송도)	인천				
		부산광역시	부산		사립대학 부지 활용, 지자체 및 대학 협의중		
	소계			3,720명	-	-	
	합계			10,115명			

주: 수용인원은 추진 중 변동 가능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둘째, 행복기숙사 운영주체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대학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행복기숙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경우 그 효과가 기숙사 운영주체의 이익으로 흡수되지 않고 기숙사비 인하 또는 기숙사 시설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³⁰⁾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건설·양도·운영(BTO) 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30년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9억원 등 2026~2030년 5년간 총 93억원(연평균 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국세 (74.7%)	-7	-10	-14	-17	-21	-69	-19
지방소비세 (25.3%)	-2	-4	-5	-6	-7	-24	-5
합계	-9	-14	-19	-23	-28	-93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

30) 2025년도 2인 1실 기준 행복기숙사는 월 27만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행복기숙사(연합)는 참여대학 및 지자체가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여 월 22만원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음.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경우 월 기숙사비가 약 2~3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

행복기숙사(사립·연합) 지원 실적(2025. 6월 기준)

1) 행복기숙사(사립) 지원실적

○ 총 42개교 54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8,223억 원 지원(수용인원 27,092명)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천 원]

지원 연도	학교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인원 (협약기준)	총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25년 기숙사비** (월, 메인실)
					공자기금	주택기금	합계	
합계			27,049	951,038	164,105	658,208	822,313	
2012년 (6개)	경희대(운동장)	'17.09.	1,002	29,437	8,833	16,710	25,543	250.0
	경희대(이문동)	'14.03.		2,580	1,115	1,207	2,322	
	경희대(회기동)	'14.03.	41	1,576	628	790	1,418	상환 완료
	단국대(천안)	'14.03.	924	19,208	6,722	10,564	17,286	255.3
	대구한의대	'14.03.	402	10,540	2,685	6,800	9,485	266.1
	세종대	'15.03.	716	19,990	3,822	12,668	16,490	308.5
	소계		3,085	83,331	23,805	48,739	72,544	
2013년 (7개)	경동대(문막-1)	'15.08.	519	14,403	5,542	6,752	12,294	상환 완료
	광운대	'17.09.	977	31,490	11,963	15,927	27,890	299.4
	단국대(죽전)	'15.03.	922	22,646	7,926	10,546	18,472	255.3
	서영대	'14.03.	102	3,247	1,221	1,700	2,921	301.2
	충북보건과학대	'14.03.	230	6,573	2,351	3,489	5,840	220.0
	경동대(양주)	'16.09.	494	13,151	5,376	6,455	11,831	상환 완료
	동의대 1차	'16.03.	770	22,095	8,294	11,586	19,880	직영(차주) 전환
소계		4,014	113,605	42,673	56,455	99,128		
2014년 (10개)	고신대	'17.03.	744	21,090	10,877	8,103	18,980	207.4
	강릉영동대	'18.03.	501	12,150	4,038	6,896	10,934	245.0
	제주관광대	'15.08.	132	5,490	2,776	2,164	4,940	260.1
	동의대 2차	'16.03.	770	24,787	9,841	12,471	22,312	직영(차주) 전환
	경동대(문막-2)	'16.09.	497	15,922	6,756	7,546	14,302	상환 완료
	성공회대	'17.03.	338	13,578	4,190	6,388	10,578	294.0
	한국국제대	'16.09.	580	11,790	4,906	5,704	10,610	폐교
	한동대 1차	'17.03.	538	13,842	5,703	6,754	12,457	214.7
	한양대(서울)	'17.03.	398	16,990	7,641	7,649	15,290	316.2
	한양대(ERICA)	'17.03.	788	24,750	9,998	12,277	22,275	268.2
소계		5,286	160,389	66,726	75,952	142,678		
2015년 (5개)	나사렛대	'17.09.	298	7,720	1,768	4,097	5,865	233.5
	대경대(경산)	'18.03.	312	9,877	3,636	4,758	8,394	216.6
	영남이공대	'17.05.	304	9,669	3,571	5,130	8,701	262.0
	송원대	'16.04.	210	6,450	2,365	3,385	5,750	238.0
	신한대(의정부)	'17.09.	196	6,490	2,494	3,346	5,840	258.0

지원 연도	학교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인원 (협약기준)	총사업비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25년 기숙사비** (월, 메인실)
					공자기금	주택기금	합계	
합계			27,049	951,038	164,105	658,208	822,313	
	소계		1,320	40,206	13,834	20,716	34,550	
2016년 (6개)	한동대 2차	'20.03.	286	8,900	-	8,010	8,010	265.7
	호서대	'21.03.	801	32,400	-	26,800	26,800	271.6
	상명대	'17.03.	164	3,907	375	3,132	3,507	259.2
	영남이공대(2차)	'20.03.	602	20,874	5	18,781	18,786	262.0
	전주비전대	'18.03.	306	10,110	137	7,951	8,088	246.0
	한성대	'19.03.	326	10,184	86	9,079	9,165	272.4
	소계		2,485	86,375	603	73,753	74,356	
2017년 (4개)	인천재능대	'19.03.	300	11,480	4,378	5,852	10,230	상환 완료
	원광보건대	'18.03.	385	10,859	1,267	8,506	9,773	220.7
	신한대(동두천)	'19.03.	398	9,090	1,472	6,708	8,180	직영(차주) 전환
	수성대	'19.03.	411	12,000	1,902	8,898	10,800	251.0
	소계		1,494	43,429	9,019	29,964	38,983	
2018년 (3개)	대구한의대(2차)	'21.03.	501	20,598	-	18,535	18,535	266.1
	대전보건대	'20.09.	164	7,100	-	6,390	6,390	255.0
	대구대	'21.03.	608	23,000	-	16,100	16,100	직영(차주) 전환
	소계		1,273	50,698	-	41,025	41,025	
2019년 (3개)	상지대	'23.03.	902	30,634	3,064*	27,570	30,634	244.5
	제주관광대(2차)	'21.09.	316	10,946	-	9,851	9,851	266.3
	극동대	'23.03.	500	16,728	1,673*	15,055	16,728	250.0
	소계		1,718	58,308	4,737	52,476	57,213	
2020년 (1개)	대경대(남양주)	('28.03.)	252	8,906	-	8,015	8,015	240.0
	소계		252	8,906	-	8,015	8,015	
2021년 (2개)	동아보건대	-	250	9,455	-	8,510	8,510	사업 종료
	대진대	'25.03.	700	34,586	2,708*	27,072	29,780	295.0
	소계		950	44,041	2,708	35,582	38,290	
2022년 (3개)	동남보건대	'25.03.	418	15,210	-	13,689	13,689	270.0
	경인여대	('27.03)	403	20,940	-	16,904	16,904	260.0
	용인대	('27.03)	400	19,595	-	17,635	17,635	270.0
	소계		1,221	55,745	-	48,228	48,228	
2023년 (2개)	아주대	('27.09)	990	53,009	-	47,708	47,708	320.0
	인하대	('27.09)	1,810	86,194	-	86,194	86,194	333.0
	소계		2,800	139,203	-	133,902	133,902	
2025년 (2개)	동명대***	('29.03)	1,000	41,402	-	20,701	20,701	250.0
	부천대***	('27.03)	200	25,400	-	12,700	12,700	299.0
	소계		1,200	66,802	-	33,401	33,401	

* 재단이 대학자부담금을 공자기금으로 지원, 대학이 운영기간 내 상환

** 기숙사비 : 운영 중인 사업장은 '25. 1학기, 배정·설계·공사 중 기숙사는 사업신청 기준

*** 사립대학 직접용자 사업방식으로 추진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2) 행복기숙사(연합) 지원실적

○ 총 11개 사업에 사학진흥기금 3,586억 원 지원(수용인원 8,959명)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천 원]

지원 연도	사업명	개관 (예정) 연도	수용규모 (협약기준)	총사업비	국고 보조금	사학진흥기금 용자액	기숙사비* (월, 2인1실)	비고
2012년	홍제	'14.03.	516	15,848	-	15,848	326.6	국유지
2014년	부경대	'17.03.	1,528	41,682	4,168	37,514	228.6	국유지(국립대)
2015년	동소문	'23.09.	750	39,992	-	39,992	356.7	국유지
2016년	천안	'20.03.	600	16,359	-	16,359	282.0	공유지
2018년	대구	'23.03.	1,000	45,100	13,800	31,300	264.0	공유지
2019년	대구교대	-	525	32,006	-	32,006	-	국유지(국립대) 사업종료
2019년	부경대 2차	-	1,000	35,425	-	35,425	-	국유지(국립대) 사업종료 예정
2020년	한국체대	('26.03.)	704	38,261	4,449	33,812	333.0	국유지 (국립대)
2020년	서울과기대	('27.03.)	1,020	39,595	4,930	34,665	250.0	국유지 (국립대)
2022년	세종 공동캠퍼스	'25.03.	500	38,043	-	38,043	325.0	공유지
	인천대	('27.03.)	816	43,630	-	43,630	280.0	국립대학 법인부지
총 계			8,959	385,941	29,371	358,594		

* 운영 중인 사업장은 '25. 1학기 기준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